

안전보건관리 규정

문서관리번호	DS-안보-221201
담당자(부서)	전상화(관리부)

(주)다솜에스앤씨

제정 및 개정 이력

일자	사유
2022.12.01	최초 제정
2024.03.06	안전보건 교육결과 보고 양식지 변경

(시행일) 본 지침은 등록된 제정 및 개정 일자 이후 즉시 시행한다.

I. 안전보건 방침

(주)다솜에스앤씨 안전·보건 경영방침

1. (주)다솜에스앤씨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2. (주)다솜에스앤씨는 안전보건관련 기본 원칙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주)다솜에스앤씨는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주)다솜에스앤씨는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합니다.
5. (주)다솜에스앤씨는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6. (주)다솜에스앤씨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규정 및 세부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합니다.

2022.12.01

(주)다솜에스앤씨 대표이사 김윤원

II. 안전보건관리 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주)다숨에스앤씨(이하 "회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령 및 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회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 방침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 성과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재해예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및 조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5.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⑤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회사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5.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8.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⑤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1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 ③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④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사고 및 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무재해 추진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호조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간과 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15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보건관리

제17조(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 회사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경영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보건경영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경영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설비 안전) 회사는 전기설비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 방지조치
2.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3. 필요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사용 및 유지·관리
4. 정전작업 전·후 전로 차단 및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감전방지 안전수칙 준수
5.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수칙 준수
6.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및 정기점검

제21조(안전검사) ① 회사는 회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작업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작업중지 등)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담당부서 또는 산업재해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에 보고하고,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상조치계획) 회사는 위험성 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피난 및 대응훈련)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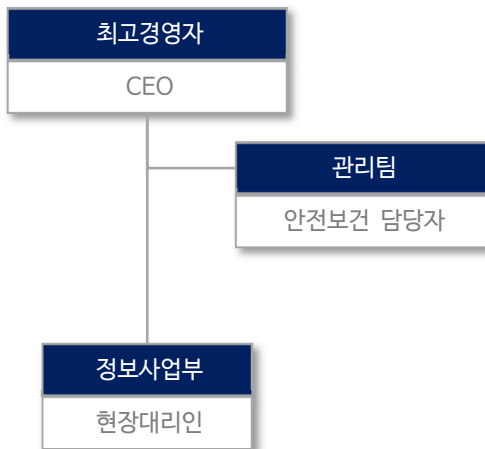
② 사업주는 공정상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진동 등의 요인으로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신경, 힘줄, 관절 등의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④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경우 해당 임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II.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1.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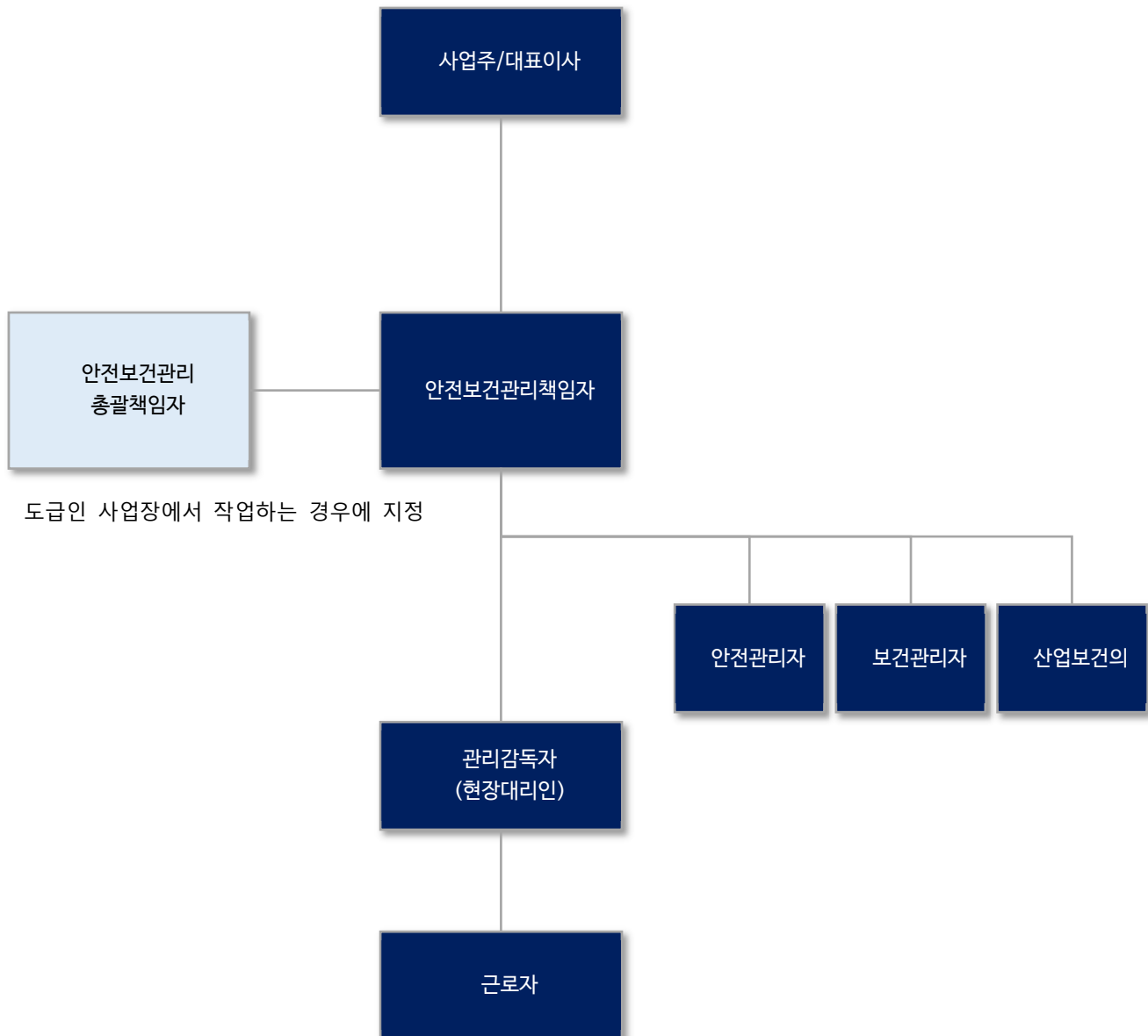


(2) 담당업무

부서	안전보건 업무
관리팀 (안전보건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개정 -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활동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위험성 평가 및 사전 예방 조치 - 안전보건 교육 등
현장대리인	-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 - 안전보건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

2.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최고안전관리책임자 지정

(1) 조직도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2) 안전보건책임자 업무분장표

구분	안전보건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수급인 대상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제공 및 실시 확인 • 위생시설의 설치 및 제공
관리감독자	• (해당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관리자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IV.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1. 산업재해 점검 요소 및 현황 관리

(1)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요소

영역	핵심 평가요소	평가척도
경영자 리더십	-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고 있는가? - 기업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적절히 배정하고 있는가? - 기업은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가?	Y/N
근로자의 참여	-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 기업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기업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가?	Y/N
위험요인 파악	- 기업은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는가? - 기업은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있는가? - 기업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 기업은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는가? - 기업은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Y/N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기업은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 기업은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 기업은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에게 위험 예방을 위한 보호구를 제공하고 있는가? - 기업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Y/N
비상조치계획 수립	- 기업은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가? - 기업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기업은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는가?	Y/N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는가? -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Y/N
평가 및 개선	- 기업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 기업은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Y/N

(2) 재해자 수 및 산업재해율 관리

구분	Y-3년	Y-2년	Y-1년 (최근 결산연도)
산업재해자 수 ¹⁾			
중대산업재해자 수 ²⁾			
중대시민재해자 수 ³⁾			
상시근로자 수 ⁴⁾			
산업재해율 ⁵⁾			

(3) 용어설명

구분	관련 용어 설명
산업재해 ¹⁾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산업재해 ²⁾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³⁾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상시근로자 수 ⁴⁾	상시근로자를 비롯하여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 포함
산업재해율 ⁵⁾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와 연평균근로자수를 통해 산업재해율을 산정 $\text{산업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

V. 안전보건교육**1. 안전보건교육훈련 계획****(1) 교육훈련 목적**

안전보건교육은 경험부족, 인지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합니다. 교육훈련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자와 교육 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2) 교육훈련 종류

교육 구분	교육 대상자	법정 교육 시간
정기교육	전 임직원	2 hr
신규입사자 교육	신규입사자 전원	2 hr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작업 담당자	2 hr
특별교육	해당 작업 담당자	4 hr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6 hr

2. 교육훈련 연간 시행 계획

교육 구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일자	교육 시간	교육 대상
정기 교육	상반기	동절기재해 예방대책	시청각	매년 1/2 휴일인 경우 익영업 일 (교육내용 중 택2)	2시간	전직원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한 이해	시청각			
		보호구착용 및 관리요령	시청각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시청각			
		감전재해 예방	시청각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대책	시청각			
	하반기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시청각	매년 7/1 휴일인 경우 익영업 일 (교육내용 중 택2)	2시간	전직원
		화기작업안전 및 밀폐공간작업안전	시청각			
		기계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	시청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시청각			
		차량계 운반기계의 위험 및 예방대책	시청각			
		건강증진 및 뇌심혈관질환예방	시청각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강의식	채용 후	2시간	입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장교육	작업 배치 전	2시간	해당 작업자
특별안전 교육	주물 및 단조작업, 로봇작업, 맨홀작업,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등 40개의 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강의식 시청각외	작업 배치 전	4시간	해당 작업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외부집체 교육	외부교육기관	6시간	선임자

* 교육훈련은 업무배치와 배치되는 고객사 업무특성에 맞추어 실시함.

3.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안전보건 교육 결과 보고서

담당	임원	대표이사

교육제목			
교육일시		교육강사(출처)	
교육장소		교육구분	■ 사 내 □ 사 외
교육과정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기타() 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 참조		
교육자료			
수행활동 (요약)			

안전보건 교육 참석자 명단

* 교육제목 :

(교육일시 :

)

순번	부서명	직책	성명	참석자 서명
1				

VI. 비상조치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비상사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제3조(사고의 구분) 사고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미한 사고 : 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사고
2.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
3.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4조(비상시 조치계획의 수립) ① 현장의 공정별 잠재 위험요소 및 비상사태 발생 사례,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②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비상시 조치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③ 소관부서장은 사고현장을 원상태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 ⑤ 1, 2급 사고의 경우에는 소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이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사고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⑦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 ⑧ 소관부서 관리감독자는 사고처리 결과를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7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관련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다.

3. 재해발생 시 대응체계

구 분	행동 및 조치절차	업무수행
산업재해 발생	현장대리인에게 즉시보고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응급조치(119호출 등) 수행 후 본사 보고	현장대리인(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파견 및 상황 점검. 사고 대응	관리감독자
이송	치료 요망 환자 응급실 이송	관리감독자
사후관리	치료경과 모니터링 및 업무 복귀 준비 - 시정조치 프로세스 수행	관리감독자

4. 재해 발생 시 업무 절차

순서	절차	활동
1	사고발생	작업중지 및 대피 - 구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
2	즉시보고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발생 경위 즉시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유관기관에 보고
3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사고의 근본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 - 전사 공유 및 교육
4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및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5. 초기 대응 행동 요령

상황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감전	해당 전기설비의 전원을 즉시 차단하고 모든 작업 중지
질식	작업 중지 후 신선한 공기가 있는 외부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진화가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
무너짐	작업장 내 기계 및 장비를 정지하고 무너진 현장 주변으로 접근 통제
기계끼임	재해발생 기계 및 장비를 정지하고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물질누출	가까운 밸브를 차단하고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
인화성물질누출	인접 점화원과 발화성 물질 제거

VII. 유해, 위험요인 조사표

1. 유해, 위험요인 조사표(예시1)

실시방법	
------	--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유해 · 위험작업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작업내용	장소	위험정도 (상중하)	사고유형	질병유형

<u>사고의 유형</u>	⑨ 감전	<u>질병의 유형</u>
① 떨어짐	⑩ 폭발, 파열	① 진폐
② 넘어짐	⑪ 화재	② 중독
③ 깔림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③ 난청
④ 부딪힘	⑬ 이상온도, 물체접촉	④ 요척
⑤ 맞음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⑤ 기타
⑥ 무너짐	⑮ 기타	
⑦ 끼임		
⑧ 절단, 베임, 찔림		

2. 유해, 위험요인 조사표(예시2)

실시방법	
------	--

수행일시		작성자	
현장작업자		확인자	

작업내용	유해 · 위험요인

VIII. 안전보건 관련 보호구 및 시설 관리

1. 안전 보호구 지급 대장

NO	지급일자	수량	소속	성명	서명	비고

2. 안전 시설 점검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대상	
(사진)	(사진)
(시설명)	(시설명)
(사진)	(사진)
(시설명)	(시설명)
점검 항목	점검 결과